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12. 5. 8.

행정위원회

###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2년 4월 27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2년 5월 3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6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2. 5. 7)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재정국장 김정진 )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2009.6.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개정(2010.6.8), 「비료관리법」의 개정(2011.7.14)등에 따라 수수료 항목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부동산 중개업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요율 변경
  - 요율 인하 : 3,000원 → 800원
- 위임 법령 개정으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신설 추가 내용

종 목	단 위	수 수 료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허가	1건	10,000원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신고	1건	5,000원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1건	50,000원
석유판매업(응제판매소) 등록	1건	30,000원
석유판매업 (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	1건	15,000원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등록	1건	50,000원
석유대체연료판매업(판매소) 등록	1건	30,000원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원
비료수입업 신고	1건	10,000원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 현 영)

- 이 개정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0년 9월 17일 일부 개정되고 2009년 6월 9일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2010년 6월 8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 2011년 7월 14일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라 우리구 수수료 징수 조례의 수수료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별표 제2호 나목의 7)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의 수수료액이 종전 “3,000원”에서 “800원”으로 변경하였는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을 적용한 것임.
  - 안 별표 제2호 아목, 자목, 차목을 아래와 같이 신설하였는바 이는 상위법령인 「소음·진동관리법」 제53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 「비료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임.

종 목	단 위	수수료액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허가	1건	10,000원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신고	1건	5,000원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1건	50,000원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	1건	30,000원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등록	1건	15,000원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등록	1건	50,000원
석유대체연료판매업(판매소) 등록	1건	30,000원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원
비료수입업 신고	1건	10,000원

-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조례의 위임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액 등을 정비하여 수수료 징수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한 사항으로 개정·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려되며 법체제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짐.

####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19 호
----------	---------

제출연월일 : 2012. 4.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2009.6.9), 「소음진동 관리법」의 개정(2009.6.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개정(2010.6.8), 「비료관리법」의 개정(2011.7.14)등에 따라 수수료 항목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부동산 중개업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요율 변경

- 요율 인하 : 3,000원 → 800원

나. 위임 법령 개정으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신설 추가 내용

종 목	단 위	수 수 료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허가	1건	10,000원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신고	1건	5,000원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1건	50,000원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	1건	30,000원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	1건	15,000원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등록	1건	50,000원
석유대체연료판매업(판매소) 등록	1건	30,000원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원
비료수입업 신고	1건	10,000원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비료관리법」, 「소음진동 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서 합의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3.29~4.18) 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사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 중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62종)”을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71종)”으로 하고 나목 7)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액 “3,000원”을 “800원”으로 한다.

**별표 제2호** 아목 중에 소음·진동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종 목	단위	수수료 (단위 : 원)
1)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허가	1건	10,000
2)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신고	1건	5,000

**별표 제2호** 자목 중에 석유판매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종 목	단위	수수료 (단위 : 원)
1)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1건	50,000
2)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	1건	30,000
3)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 판매업·특수판매소)신고	1건	15,000
4)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등록	1건	50,000
5) 석유대체연료판매업(판매소)등록	1건	30,000

**별표 제2호** 차목 중에 비료생산업 및 수입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종 목	단위	수수료 (단위 : 원)
1)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
2) 비료수입업 신고	1건	10,00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제3조 관련)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제3조 관련)																																															
<p>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62종) (단위: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종 목</th> <th style="text-align: center;">단위</th> <th style="text-align: center;">수수료액</th> </tr> </thead> <tbody> <tr> <td>가. (생략)</td> <td></td> <td></td> </tr> <tr> <td>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6) (생략) 7)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td> <td style="text-align: center;">1건</td> <td style="text-align: right;">3,000</td> </tr> <tr> <td>8) 삭제</td> <td></td> <td style="text-align: right;">0</td> </tr> <tr> <td>다.~사. (생략)</td> <td></td> <td></td> </tr> <tr> <td>(신 설)</td> <td></td> <td></td> </tr> <tr> <td>(신 설)</td> <td></td> <td></td> </tr> <tr> <td>(신 설)</td> <td></td> <td></td> </tr> </tbody> </table> <p>3.~4. (생략)</p>	종 목	단위	수수료액	가. (생략)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6) (생략) 7)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건	3,000	8) 삭제		0	다.~사.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p>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71종) (단위: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종 목</th> <th style="text-align: center;">단위</th> <th style="text-align: center;">수수료액</th> </tr> </thead> <tbody> <tr> <td>가. (현행과 같음)</td> <td></td> <td></td> </tr> <tr> <td>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d style="text-align: right;">800</td> </tr> <tr> <td>다.~사. (현행과 같음)</td> <td></td> <td></td> </tr> <tr> <td>아. <u>소음·진동배출시설 허가</u> 및 <u>신고 등에 관한 사항</u> 1) <u>소음·진동배출시설 설</u> <u>치</u> <u>허가</u> 2) <u>소음·진동배출시설 설</u> <u>치</u> <u>신고</u></td> <td style="text-align: center;">1건  1건</td> <td style="text-align: right;">10,000  5,000</td> </tr> <tr> <td>자. <u>석유판매에 관한사항</u> 1) <u>석유판매업(주유소)등</u> <u>등록</u> 2) <u>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u> <u>등록</u> 3) <u>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u> <u>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u> <u>소)</u> <u>일반판매소</u>신고 4) <u>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u> <u>등록</u> 5) <u>석유대체연료판매업(판매</u> <u>소)</u> <u>등록</u></td> <td style="text-align: center;">  1건 1건 1건  1건 1건</td> <td style="text-align: right;">  50,000 0 30,000 0 15,000 0  50,000 0 30,000 0</td> </tr> <tr> <td>차. <u>비료생산업 및 수입업</u> <u>에</u> <u>관한 사항</u> 1) <u>비료생산업 등록</u> 2) <u>비료수입업 신고</u></td> <td style="text-align: center;">  1건 1건</td> <td style="text-align: right;">  30,000 0 10,000 0</td> </tr> </tbody> </table> <p>3.~4. (현행과 같음)</p>			종 목	단위	수수료액	가. (현행과 같음)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800	다.~사. (현행과 같음)			아. <u>소음·진동배출시설 허가</u> 및 <u>신고 등에 관한 사항</u> 1) <u>소음·진동배출시설 설</u> <u>치</u> <u>허가</u> 2) <u>소음·진동배출시설 설</u> <u>치</u> <u>신고</u>	1건  1건	10,000  5,000	자. <u>석유판매에 관한사항</u> 1) <u>석유판매업(주유소)등</u> <u>등록</u> 2) <u>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u> <u>등록</u> 3) <u>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u> <u>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u> <u>소)</u> <u>일반판매소</u> 신고 4) <u>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u> <u>등록</u> 5) <u>석유대체연료판매업(판매</u> <u>소)</u> <u>등록</u>	  1건 1건 1건  1건 1건	  50,000 0 30,000 0 15,000 0  50,000 0 30,000 0	차. <u>비료생산업 및 수입업</u> <u>에</u> <u>관한 사항</u> 1) <u>비료생산업 등록</u> 2) <u>비료수입업 신고</u>	  1건 1건	  30,000 0 10,000 0
종 목	단위	수수료액																																														
가. (생략)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6) (생략) 7)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건	3,000																																														
8) 삭제		0																																														
다.~사.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종 목	단위	수수료액																																														
가. (현행과 같음)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800																																														
다.~사. (현행과 같음)																																																
아. <u>소음·진동배출시설 허가</u> 및 <u>신고 등에 관한 사항</u> 1) <u>소음·진동배출시설 설</u> <u>치</u> <u>허가</u> 2) <u>소음·진동배출시설 설</u> <u>치</u> <u>신고</u>	1건  1건	10,000  5,000																																														
자. <u>석유판매에 관한사항</u> 1) <u>석유판매업(주유소)등</u> <u>등록</u> 2) <u>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u> <u>등록</u> 3) <u>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u> <u>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u> <u>소)</u> <u>일반판매소</u> 신고 4) <u>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u> <u>등록</u> 5) <u>석유대체연료판매업(판매</u> <u>소)</u> <u>등록</u>	  1건 1건 1건  1건 1건	  50,000 0 30,000 0 15,000 0  50,000 0 30,000 0																																														
차. <u>비료생산업 및 수입업</u> <u>에</u> <u>관한 사항</u> 1) <u>비료생산업 등록</u> 2) <u>비료수입업 신고</u>	  1건 1건	  30,000 0 10,000 0																																														